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-19호

교육환경보호구역 (재)설정 고시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「교육환경보호구역」을 설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 년 6 월 18 일

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

가. 절대보호구역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

나. 상대보호구역: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일자 : 2021. 6. 18.

3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

4. 고시내용

가.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

학 교 명	소 재 지	비 고
수암유치원	중구 신당동 844	

※ 구체적인 보호구역의 위치는 보호구역도 및 편입필지 현황 참조

나. 보호구역도 및 편입필지: 「붙임」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일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「교육환경보호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심의결과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.

나.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 선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.

다. 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(https://jbedu.sen.go.kr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.

붙임 1.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.

2. 교육환경보호구역 편입필지 현황 1부. 끝.